



2016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

2015. 8.

I. 2016년도 지방재정 여건

1 세입 여건

1. 자체수입

- (지방세)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
 - 낮은 물가상승세, 그리스 사태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곤란
- (세외수입)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
2. 이전수입

- (지방교부세)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- (국고보조금)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소요는 지속 증가될 전망

우리도 세수확보 여건

- ◆ 지방세는 소비심리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, 정부의 비과세·감면정책 기조유지,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◆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정부의 복지수요 반영비중 확대 움직임 등에 따라 2015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

⇒ 2016년도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
2 세출 여건

- 취약계층 보호,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
 -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,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
 - 영유아보육, 어린이집 확충,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,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·고령사회 대비
 - 책임읍면동 실시로 인한 주민밀착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요자·현장 중심의 One-stop 서비스 강화

- 복지 이외에도 소방 및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,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할 전망
 - 재난 및 안전관리,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
 - 문화, 예술, 체육, 콘텐츠산업 등과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

-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
 - 도로·교량·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
 - 자연환경 조성,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, 상·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

우리도 투자재원 여건

- ◆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의 도정목표 실현과 민선6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와
 - ◆ 기초연금, 영유아보육,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⇒ **세입 대비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여력 약화 예상**

Ⅱ. 2016년도 재정운용 방향

1 재정운용 기본방향

지방재정운용 목표

건전한 재정운용, 행복한 도민

재정운용 기본방향

-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
-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생활 안정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대비 투자로 성장기반 강화

재정원칙 준수

- ◆ 지방재정 운용 기준 준수
- ◆ 재정지출 자율통제 강화
- ◆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

도민생활 안정

- ◆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추진
- ◆ 모두가 행복한 평생 복지
- ◆ 안전관리 기능 강화

성장기반 강화

- ◆ 지역경제 활성화
- ◆ 신성장 동력 확보
- ◆ 자체재원 확충 강화

2 재정운용의 중점

1. 재정원칙 준수

□ 지방재정 운용기준 준수

-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
-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사전심사 내실화
 - 축제·행사 유치,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
 - 자체심사시 관대화 경향방지,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투자심사의 엄정성·객관성 제고
-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
 -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,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

□ 재정 자율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

- 모든 사업은 원점(zero-base)에서 분석·점검,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실시
- 행사·축제성 경비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,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
-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, 불요 불급한 경비 등 경상경비는 획기적 절감 추진
- 지방채는 고금리채 차환과 여유자금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무구조 적극 개선
- 주민참여예산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공시 확대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, 도민의 알 권리 보장

2. 도민생활 안정

□ 「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」 사업 지속 투자

-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민복지정책 사업에 재정지원 강화
- 저소득·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과 9988 행복바우처 사업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강화
- 물가 안정,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, 골목상권 보호 등 도민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지속 투자
- 맞춤형 일자리 창출, 투자유치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

□ 안전관리 기능강화로 도민생활 안정

- 소방,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 우선지원
- 어린이, 여성,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·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
-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

3. 성장기반 강화

□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의 실현기반 구축에 주력

- 국가재정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사업과 道 현안사업 등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에 집중투자
-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실현,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

□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

- 창조적 R&D투자, 신산업 육성 등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에 투자
-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, 바이오, 태양광 산업, 화장품·뷰티산업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
-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투자

Ⅲ.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

1 예산편성 기본 방향

- ◆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도정 주요 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
- ◆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준수

1. 세입예산 편성

① 지방세

- 2016년도 지방세 징수 가능액 전액 계상
- 과다·과소 계상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경제상황 및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

② 세외수입

-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계상
- 징수가능한 수입액은 전액 계상

③ 지방교부세

- 2016년 산정결과 및 안전행정부 통지액 반영
- 예산편성 기간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내국세 증감을 및 우리도 점유율 등을 감안 추계하여 계상

④ 국고보조금(지특, 기금 포함)

- 소관 중앙부처 내시액 계상(내시액 통지 : 10.15까지)
- 소관 중앙부처의 내시가 없는 경우 예산안 반영 불가
 - ※ 단, 사회복지비 등 매년 지원되는 법정·의무적 경비는 전년도 지원내역 등을 고려 추계하여 반영 가능

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

-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 최소경비 범위내에서 적정액 계상

2. 세출예산 편성

경상경비 최소화 ⇨ 투자재원 최대 확보

- ◆ 각종 행사.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는 zero-base에서 검토
- ◆ 관행적.낭비적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
- ◆ 불요.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

① 공통사항

-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전액 계상
- 업무추진비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준액 준수
- 사전절차를 이행하고,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
- 신규(보조)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
 - 유사중복, 자부담 능력여부, 사업 성격상 보조사업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방침 결정(지사님 결재)후에 예산 요구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중 기준외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준수(재원판단후 예산담당관 조정)
-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시군이양(시군 시행)사업에 대한 사업비 미지원 계획
-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
 -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수 있고,
 - 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의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
 -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

○ 지방보조금(민간보조금, 시군보조금 등) 예산편성 원칙

-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편성(예산요구시 지원근거 ‘○○법 ○조’ 반드시 기재)

※ 2015년도 예산편성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소관부처 유권해석은 2016년도 부터 인정 불가

-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민간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(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 편성 불가, 예산요구시 지원근거 ‘○○법 ○조’ 반드시 기재)

- 민간사회단체 보조금(경상사업,법정운영비)은 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’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요구

※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현재와 같이 자치행정과 일괄 편성

② 사업예산

-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으로 심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원칙 견지

-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 등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지양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

- 지역개발 및 도로건설 등은 투자속도를 조절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과 도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

- 일회성·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인정하고, 과 연찬회 경비는 예산편성 제외

- 연구용역비는 ‘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

-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훈령)에 따라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배분후 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

※ 부서별 한도액은 별도 통보예정이며, 반드시 한도액 범위내 예산요구

④ 기타사항

-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는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
- 여유재원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여 지방채무 구조 적극 개선

③ 행정운영경비

- 인력운영비 :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상 소요를 판단 요구
- 기본경비 :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경비('15년 수준 유지)

※ 사업성격의 일반수용비, 특정수요 여비 등은 사업에 포함 편성

< 기본경비의 범위 >

- 201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)
- 202 여비(국내여비)
- 203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정원가산, 부서운영)
- 204 직무수행경비(직책급업무추진비)
- 405 자산취득비(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)

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

- 근거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
-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, 민간행사사업,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, 사회복지사업, 민간자본사업보조
- 예산편성 원칙

- ▶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
 -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, 국가기관(시설) 설립비 등 포괄적·일반적 예산편성 금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
- ▶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
- ▶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
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 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 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 -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▶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, 보조금으로 편성·집행하지 않도록 유의
- ▶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- ▶ 일몰도래사업,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, 보조단체의 운영·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
- ▶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
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

- ❖ 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(308-06)의 경우에도 사업완료 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

3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

□ 경비성격

-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

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

- (대상) 민간경상사업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, 민간행사사업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, 사회복지사업, 민간자본사업보조
- (운영)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

보조금 총한도액

❖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(총한도액)×(1+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)

•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* 적용기준 : 일반+기타특별회계

※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= 전전년도, 전전전년도,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

• 보조금 예산은 국·시·도비 보조금(지방비 부담금 포함)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

▶ 「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국제행사, 전국단위 및 시·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(전국체전 등)와 국고보조금, 시·도비보조금(해당 자치단체 부담분, 지자체 매칭펀드사업*지방비 부담분 포함) 등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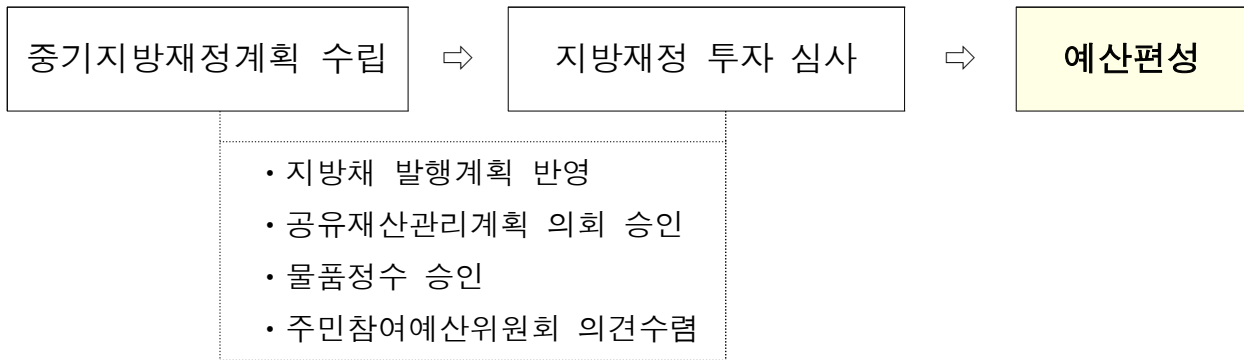
*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, 세부사업명 옆에 “(국가직접지원)”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

▶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(시·군·구는 시·도)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

□ 관리기준 등

- 보조금 예산의 편성,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, 정산 및 성과평가,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호조)을 통한 이력관리, 취소 및 반환,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

4 사전이행제도 확행



1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
□ 제도개요

-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- 중·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,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 마련

□ 운영근거 : 지방재정법 제33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제출

□ 대 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□ 계획기간 : 2016년 ~ 2020년

- ☞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

지방재정법 제33조 개정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변경 (주요변경사항 참조)

□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변경 사항

【지방재정법 제33조 개정, 2014. 5. 28공포】

□ **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** (제3항 제6호, 2015년 작성부터 적용)

○ ‘의무지출’*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‘재량지출’**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

- (의무지출)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,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
지방재정법 (제33조③)	지방재정법 시행령 (제39조)
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1. '특별회계전출금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,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.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·도가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·도가 시·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) 3.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

- (재량지출) 의무지출 외의 모든 지출(법 제33조제3항제6호)

※ 구체적 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

※ 국가는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~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

□ **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** (제3항 제7호, 2015년 작성부터 적용)

-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‘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’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
-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 포함) 및 기금, 지방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(총계기준으로 작성)

※ 순계기준은 2016년 회계연도 ‘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’ 작성

- 작성주체 : 시도·시군 예산담당부서
 - 작성협조 : 시도교육청, 지방공사·공단,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·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전체
- 작성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청 특별회계 포함), 기금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

□ **추경 예산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강화**

-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된 추가 국고보조,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은 추경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

□ **시도 교육특별회계와 연계강화**

- 시·도지사와 교육감이 사전 협의*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법정전입금(지방교육세, 시도세, 담배소비세), 비법정전입금,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, 학교급식비, 누리과정비 등

2. 지방재정 투자심사

□ 운영근거 :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7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함

※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<지방재정법 제33조11항 신설>

□ 심사대상 사업

<자체심사>

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•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(지방채 제외)으로 추진하는 모든사업 •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----	---

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 4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•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(지방채 제외)으로 추진하는 모든사업 •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---	---

<의뢰심사>

시군 ⇒ 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 4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시군 신규 투자사업 •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 청사 및 문화·체육시설 신축사업 •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-----------	---

道 ⇒ 중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道 신규사업 및 100억원이상 시군 신규사업 •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道の 청사 및 문화·체육시설 신축사업 •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道 또는 시군의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
-----------	---

3. 지방채 발행

□ 운영근거 : 지방재정법 제11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

□ 발행규모

-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액만 발행

□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업

-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-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-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- 지방채의 차환

□ 지방채 발행 기준

- 사업계획의 필요성, 타당성
 - 주민여론(반응, 호응도, 수혜도)
 - *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산 문제점,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
 -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,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
 -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·허가 사항 이행 여부
 - 시공기간의 타당성
 - 시설개축·보수의 경우는 구(舊) 시설의 경과연수, 구조 등
- 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
 - 확정된 관리채무 이외 우발채무, 공사공단 부채 등
 - 가용재원 규모, 상환능력, 조정교부금 등 법정 지급의무 미이행, 분식결산 여부 등 감안 등 감안

-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
 -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(이자율 정도, 상환기간, 상환재원 등)
 - 기채시기와 자본시장 상황, 자금조달 능력 등
 -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
- 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
 - 기수립 채무관리계획 이행 실태,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실효성 정도 등
 - 고리채를 저리채로 차환, 환위험 관리계획의 수립
 - 순세계잉여금의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
 - * 지방재정법 제52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.

4.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

- 운영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

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범위

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득 →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, 토지는 1,000㎡ 이상 • 처분 →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, 토지는 2,000㎡ 이상
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득 → 1건당 예정가격 20억원 이상, 토지는 6,000㎡ 이상 • 처분 →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, 토지는 5,000㎡ 이상

※ 예정가격 기준 : 토지 → 개별공시지가, 건물 →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

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
-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

-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·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)·처분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-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·처분
-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
-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
-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

5. 물품정수 승인

운영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-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정수배정

- 정수물품은 예산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정수배정 후 예산에 계상
 - ※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의 소요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

정수승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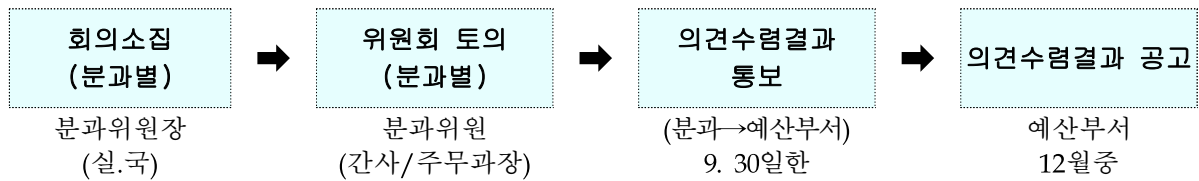
- 정수관리 대상 물품(업무용 정수) : 57개 품목

6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□ 운영근거 : 지방재정법 제39조, 동법시행령 제46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.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체계



□ 주민참여위원회(분과위원회) 운영

- 운영기간 : '15. 9. 21 ~ 9. 25
- 운영방법 : 분과위원회별 의견수렴
 - * 6개 분과위(일반행정, 복지여성, 경제환경, 농정, 문화체육, 안전건설)
- 주요내용 : 2016년 예산편성 방향 의견서 작성 및 주요사업 우선 순위 선정
 - ※ 사업장 현장방문 요구 시 적극 협조

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〉

- 운영근거 :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(11. 7. 8)
- 구성일자 : 2011. 9. 27(임기 2년)
- 구성인원 : 60명(6개 분과위, 각 10명)

□ 의견수렴 결과제출(분과위→예산담당관실) : 9. 30 한

6 2015년과 달라지는 예산제도

1.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

-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년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
-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(2015. 11. 10)

2.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

- 2015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(익년도 2. 28→당해년도 12.31)됨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김
 - 요 구 :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 → 10일 이내
 - 확 정 :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 → 30일 이내

3.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개선

- ‘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
 - ※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사례
 - 직제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‘○○시 교통운영관’에 대한 편성
- 신설된 군 단위 국장급에 대한 편성기준 마련
 - 기획실장(4급) 3,300천원 → 실국장급(4급) 3,300천원

4. 세입·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

① 세입예산

-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(311-04) 세입과목 신설
- 그외수입(224-06)에 ‘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협력사업비’ 편성근거 신설

②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기준 개선

-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·출연토록 규정하고, 출자·출연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.
- ‘출연금(306)’ 대상에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명시

현 행	개 정(안)
<p>306. 출연금</p> <p>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</p> <p>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</p> <p>※ 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 <p>2. (생략)</p>	<p>306. 출연금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, <u>지방공기업평가원</u> 등 출연금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,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(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)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502. 출자금</p> <p>1. 용자금을 제외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	<p>502. 출자금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,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(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)</u></p>

○ 공립대학 운영경비 지원과목 신설

현 행	개 정
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~ 04 (생략) <u>< 신 설 ></u>	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~ 04 (현행과 같음) 05 공립대학 운영비 1. 「 <u>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*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

○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

현 행	개 정
100 인건비 101 인건비 03. 무기계약직보수 1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1) 환경미화원(생략) 2)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○ <u>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</u>	100 인건비 101 인건비 03. 무기계약직보수 1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1) 환경미화원(현행과 같음) 2)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○ <u>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·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</u>
04.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.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~다. (생략) <u><신설></u>	04.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.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 <u>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